

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 2006. 4. 18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4. 18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21호)

다 2006. 4. 25 : 제10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)

가 제안이유

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나 주요내용

1) 읍·면·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조·제7조)

■ 읍·면·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

■ 시장과 읍·면·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

2)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(안 제7조·제11조)

■ 자치센터 시설·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

3)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(안 제17조·제18

조)

-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(중선거구제)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
-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
-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, 각종 교육·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 마련

다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읍·면·동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으며,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권한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기초의원 선거방법 변경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임원 및 위원,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하였고 위원들의 주민의견 수렴과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의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
- 검토의견으로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,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